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건설관리과)

의안번호	제 394 호
제 출 자	양순임 의원 외 14명 (2024. 11. 6.)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현수막 제작시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안 제4조)

라. 재정지원(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

다. 부서협의 : 건설관리과

라. 입법예고 : 2024. 11. 7. ~ 2024. 11. .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등 환경유해 물질 배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탄소중립 및 자원 순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회성 폐기물인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환경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양순임 의원 등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본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¹⁾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행계획 수립·시행,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서는 구청장은 성북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1. 5.>

록 함. 또한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재정지원)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교육 및 홍보)에서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23년 12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파주시에 이어 37개 지자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행정지원 및 사업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폐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제도(입법) 정비, 예산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임.

○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 조례로 의의가 있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추진되는 조례지만 추후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이나 구

체적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공포 후 시행 가능한 자치입법이 되도록 하여 선언적 조례로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